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장 불신임 및 부의장·상임위원장 해임 제도 도입〉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95호)

2024. 10.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조계원 · 김용민 · 문정복 · 복기왕 · 김현정
이재강 · 김동아 · 김준혁 · 장경태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9. 19.

3. 회 부 일 : 2024. 9. 20.

※ 의안번호 : 409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임. 이러한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임.

이러한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헌법 및 「국회법」은 의사 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은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음.

그러나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이와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 의사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이에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및 국회의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20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3(의장의 불신임 의결) ①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신임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불신임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설>	제20조의4(부의장의 해임 의결) ① 부의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경우 국회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 의결은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해임 여부를 무기명투

현행	개정안
<신설>	<u>표로 표결한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임의결이 있으면 해당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u> <u>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해임 의결)</u> <u>① 상임위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경우 국회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해임 의결은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u> <u>③ 제2항의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해임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임의결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u>

현행법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불신임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안되

었고, 제3대 국회에서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된 사례가 있음¹⁾.

개정안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및 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의 발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장 의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경우 ①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②불신임안 발의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불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해임안의 경우 ①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경우에 ②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③의장 불신임안과 마찬가지로 해임안 발의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불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④해임안이 가결되면 해당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사 절차를 주관하고 안건 심의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해임 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1)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및 사퇴 촉구 결의안의 경우 제22대국회(2024년 9월말 기준)까지 총 42건이 제출되었고, 제3대국회에서 광상훈 국회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 폐기 또는 철회되었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및 사퇴 촉구 결의안의 경우 제22대국회(2024년 9월말 기준)까지 총 7건이 제출되었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 또는 철회되었음. (국회사무처, 2020의정자료집, p.322~333 및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그러나, 개정안은 의장 불신임 또는 부의장·상임위원장 해임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불신임안·해임안 등의 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신임안·해임안의 처리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²⁾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임 요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9. 25.,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국회법」은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의 경우 일정기한 내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 간주하도록 규정함.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12조(표결방법)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표-2] 유사취지 법률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개정안	의장 불신임	◦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발의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해 임	◦ 직무집행상 헌법·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태만, 부당한 권한 행사 시 ◦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발의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 ◦ 해임 의결 시 해임
황운하 의원안	상임위원장 사임요구	◦ 헌법·법률 위반, 직무태만, 고의·중대한 과실로 국회나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발의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 ◦ 사임 요구 가결 시 상임위원장은 사임하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014